

## 비행장 시설관리 및 운영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[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47조](#), 같은 법 시행규칙 [제19조 별표4](#)에 의한 비행장시설의 관리·운영 및 사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비행장운영 및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)** 이 규정은 [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5조](#)에 의한 비행장관리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공용 육상비행장시설관리자에게 적용한다.

**제3조(비행장시설관리자 준수사항)** ①비행장시설관리자는 [공항시설법 제31조 및 제47조](#)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비행장의 안전운영을 위해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비행장시설관리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명한 검사관이 검사관증을 소지하고 비행장의 관리검사를 위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③검사관이 당해 검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④비행장시설관리자는 관할 비행장의 시설 또는 운영절차 등 비행장 운영체계에 중대한 변경이 있거나 비행장의 물리적 특성, 시설 및 장비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「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지침」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)** ① 비행장시설관리자는 공항안전 운영기준(국토교통부고시)에 의한 별표의 내용을 포함하여 ‘공항운영 규정’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비행장시설관리자가 비행장시설의 효율적 관리·운영·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항안전운영기준(국토교통부고시)에 따른다. 다만, 공항안전운영기준의 ‘공항운영규정’ 과 관련한 제15조 내지 제16조 및 제155조 내지 제161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**제5조(재검토 기한)**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 <2017. 4. 14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